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정량표시상품 관리제도 개선〉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372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정량표시상품의 정량검사 기준 변경 .....  | 3  |
| 2.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 지정 등 .....    | 12 |
| 3. 정량표시 위반사실의 공표 근거 마련 ..... | 18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원이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11. 19.
3. 회부연월일 : 2025. 11. 20.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은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말하며,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을 표시할 때에는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조사 결과, 실제 내용량이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은 사례들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정량표시상품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정량표시상품에 정량을 표시하는 경우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고, 위반 시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이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등).

### Ⅲ. 검토의견

#### 1. 정량표시상품의 정량검사 기준 변경

개정안은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을 표시하는 경우 실제 내용량이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등).

#### [ 개정안 조문대비표 ]

| 현행                                                                                                                                                                                   | 개정안                                                                                                     |
|--------------------------------------------------------------------------------------------------------------------------------------------------------------------------------------|---------------------------------------------------------------------------------------------------------|
| 제41조(정량표시상품) ① 정량표시상품을 제조, 수입,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정량표시상품사업자”라 한다)는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성명 및 정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 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u> | 제41조(정량표시상품) ① -----<br>-----<br>-----<br>-----<br>-----<br><u>이 경우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u>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73조(벌칙) -----<br>-----<br>-----<br>-----.                                                              |
| 1. ~ 5.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
| 6.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u>상품에 표시</u>                                                                                                                                        | 6. -----<br>----- <u>상품에 표시</u>                                                                         |

|                                   |                               |
|-----------------------------------|-------------------------------|
| <p>된 양과 실제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표시한 자</p> | <p>된 양을 실제 내용량보다 크게 표시한 자</p> |
|-----------------------------------|-------------------------------|

현행법<sup>1)</sup>은 정량표시상품을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이하 “정량”)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상품으로 정의하고,

정량표시상품을 제조, 수입,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정량표시상품사업자”)로 하여금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성명 및 정량을 표시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상품에 표시된 양(이하 “표시량”)과 실제 내용량(이하 “실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sup>2)</sup>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 1)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량표시상품”이란 제4조에 따른 법정단위인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이하 “정량”(定量)이라 한다]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제41조(정량표시상품)** ① 정량표시상품을 제조, 수입,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정량표시상품사업자”라 한다)는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성명 및 정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방법 및 검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비법정단위의 단속, 교정대상 측정기기의 교정이력 확인, 정량표시상품의 정량관리 및 불법계량기의 유통방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업자등,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정량표시상품사업자, 계량을 수행하는 자 및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2. 사업장, 점포, 영업소, 사무소, 공장, 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계량기의 훼손·조작 여부 확인 등 위반사항에 대한 검사 및 질문
3. 유통 중인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 등에 대한 시판품의 조사

정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유통 중인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시판  
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sup>3)</sup>은 곡류, 과자류 등 27종을 정량표시상품  
의 종류로 지정하고, 정량의 단위 및 표시량에 따른 허용오차 등을 규  
정하고 있으며, 정량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고시인 「정량표  
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에서 정하고 있음.

이러한 정량표시상품 관리제도는 공정한 상거래와 소비자 권리보호  
를 목적으로 1992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정량표시상품의 제조과정  
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차를 감안하기 위한 취지로 현재까지 개별  
허용오차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2) “허용오차”란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포장에 표시된 정량과 측정에 의해 결정된 정량표시상품  
정량의 실제 내용량의 차이로서 허용할 수 있는 부족량을 말함.

3)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계량기의 정의 등)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별표 1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제36조(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란  
별표 20에 따른 허용오차를 말한다.

제37조(정량의 표시방법 및 검사기준)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방법은 별표 21과  
같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정량의 검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설비에 관한 사항
2.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에 관한 사항
3.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
4. 오차의 계산방법 및 판정에 관한 사항
5. 검사성적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정량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정량검사 절차를 살펴보면, 유통 중인 동일한 정량표시상품 3개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그 중 1개라도 법 제41조제1항4)에 따른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 상품 3개를 추가로 채취하여 재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에서도 1개 이상이 허용오차를 초과할 경우 정량표시 위반으로 최종 판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절차에 따라 각 시료의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에 미달하더라도 그 부족량이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적합 과소실량’으로 분류되어 적합한 정량표시로 인정되는 반면, 일부 시료에서라도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부족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거쳐 ‘부적합 과소실량’으로 판정되어 정량표시 위반에 해당하게 됨.

이처럼 현행 정량검사는 각 시료의 개별 허용오차 준수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채취한 시료 전체의 실제 내용량이 모두 표시량에 미달하더라도 개별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는 한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는 구조임.

---

#### 4) 「계량에 관한 법률」

**제41조(정량표시상품)** ① 정량표시상품을 제조, 수입,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정량표시상품사업자”라 한다)는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성명 및 정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 결과, 정량표시상품사업자가 모든 상품의 내용물을 의도적으로 허용오차 한계 수준까지 적게 충전하는 경우<sup>5)</sup>에도 현행법상 적합한 정량표시로 인정되어 이를 제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 정량검사 결과를 개별 시료의 허용오차 준수 여부가 아닌 채취한 시료 전체의 실제 내용량을 평균하여 표시량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할 경우 현행 제도의 한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각 시료가 개별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어 형식적으로는 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시료 전체의 평균실량이 표시량에 미달하는 경우(이하 “과소 평균실량”)에는 해당 상품이 평균적으로 소비자에게 표시된 양보다 적은 내용물이 제공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10년간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 결과<sup>6)</sup>를 살펴보면, 현행 기준상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부적합 과소실량’의 비중은 1.1%에 불과한 반면, 평균실량이 표시량에 미달하는 ‘과소 평균실량’ 제품의 비중은 전체의 2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액화석유가스, 우유, 도료, 꿀 등 일부 제품군에서는 과소 평균

---

5) (예시) 300mL 우유의 경우, 개당 9mL 만큼의 오차를 허용하므로 이를 최대로 활용할 경우 이론적으로 1,000개 당 30개의 추가 생산이 가능함.

6) 최근 10년간(2015년 ~ 2024년) 6,985개 정량표시상품의 20,955개(=6,985×3) 시료를 검사한 결과

실량 제품의 비중이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행 정량검사 기준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음<sup>7)</sup>.

### [ 최근 10년간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결과 ]

|                     |                     |                     |
|---------------------|---------------------|---------------------|
| 법적 허용오차<br>↓        | 표시량<br>↓            |                     |
| 부적합<br>과소실량<br>1.1% | 적합<br>과소실량<br>22.0% | 적합<br>과대실량<br>75.9% |

자료 : 산업통상부

### [ 평균실량과 표시량의 비교 결과 ]

| 구분 | 평균실량<표시량<br>(과소 평균실량) | 평균실량=표시량 | 평균실량>표시량 | 합계      |
|----|-----------------------|----------|----------|---------|
| 비율 | 21.7 %                | 4.0 %    | 74.3 %   | 100.0 % |

자료 : 산업통상부

### [ 과소 평균실량 비중이 30%가 넘는 제품군 ]

| 제품군        | 액화석유가스 | 우유     | 도료     | 꿀      |
|------------|--------|--------|--------|--------|
| (제품군 내) 비율 | 47.6 % | 42.2 % | 35.1 % | 34.3 % |

자료 : 산업통상부

이에 개정안은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을 표시하는 경우 실제 내용량이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도록 규정함으로

7) [단독] 30년 동안 속였다...라면·우유 용량 교묘히 줄였다' (한국경제, 2025. 10. 22.)

써, 현행 개별 허용오차 관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량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개정안의 문언으로만 보면, 현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표시량과 실제 내용량 간의 허용오차 준수 의무를 전면적으로 삭제하고, 개별 상품 단위에서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에 미달하는 경우를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동 개정안이 현행 개별 허용오차 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하면서 향후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시료 전체의 평균실량이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정량검사 기준에 ‘평균량’ 개념을 도입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러한 설명을 전제로 할 경우, 개정안은 평균량 기준 도입이라는 실질적 규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구현하려는 구조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하위법령을 통해 정량표시상품의 적합 여부 판단 기준에 ‘평균량’ 개념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검사기준의 기술적 변경에 그치지 않고, 정량표시 위반 여부 및 처벌 대상의 범위(안 제73

조제6호<sup>8)</sup>)를 실질적으로 확대·변경하는 효과를 수반할 수 있음.

특히, 현행법상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적함으로 분류되던 ‘과소 평균실량’ 제품에 대해서도 위반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어, 그 도입 여부와 적용 방식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규제 범위가 현저히 달라질 수 있음.

그럼에도 개정안의 문언상 평균량의 개념이나 이에 따른 판단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아, 평균량 기준 도입의 취지가 법률에 의해 직접 구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법률상 근거의 명확성 및 규제 범위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쟁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한편,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역시 개별 허용오차 검사방식의 한계를 고려하여 포장 상품의 평균 실제량이 표시량 이상이 되도록 하는 ‘평균량’ 개념의 도입을 권고(OIML R 87)<sup>9)</sup>하고 있으며, 미국·독일·중국·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도 개별 허용오차 기준과 평균량 기준을 병행하여 정량표시상품을 관리하고 있음<sup>10)</sup>.

---

8) **안 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6.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상품에 표시된 양을 실제 내용량보다 크게 표시한 자

9) OIML R 87(권고) 상 평균량 요건: 포장 상품의 평균 실제량은 적어도 표시량과 동일해야 함.

10) 해외 주요국의 정량검사 기준

종합적으로 볼 때, 평균량 기준을 도입하여 현행 개별 허용오차 관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의 정책적 방향성은 국제 권고기준 및 주요국의 규제 동향과도 부합함.

다만, 평균량 기준이 정량표시상품의 적합 여부 및 위반 판단 구조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핵심요소인 만큼, 그 도입 여부와 기본적인 판단 원칙은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따라서, 시료별 실제 내용량이 개별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시료 전체의 평균실량이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법률에 명시하되, 구체적인 검사방법과 판정 절차 등 기술적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자구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 가      | 검사 기준         | 비고                  |
|----------|---------------|---------------------|
| OIML(권고) | 개별 허용오차 + 평균량 |                     |
| 미 국      | 상 동           |                     |
| 독 일      | 상 동           |                     |
| 중 국      | 상 동           |                     |
| 호 주      | 상 동           |                     |
| 한 국      | 개별 허용오차       | OILM 기준 차용          |
| 일 본      | 개별 허용오차       | OIML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

자료 : 산업통상부

## 2.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 지정 등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등).

### [ 개정안 조문대비표 ]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제42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li> <li>2.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li> <li>3. 그 밖에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li> </ol> <p>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p> |

제66조(청문)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②·③ (생략)

제7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서 제2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청문)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②·③ (현행과 같음)

제7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  
-----  
-----.

|                                   |                                                                            |
|-----------------------------------|----------------------------------------------------------------------------|
| 1. · 2. (생략)<br><u>&lt;신설&gt;</u> | 1. · 2. (현행과 같음)<br>3. 제42조의2에 따라 정량표시상품의<br>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br>전담기관의 임직원 |
| 4. · 5. (생략)                      | 4. · 5.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50조<sup>11)</sup>는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정량표시상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 중인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65조제2항제7호<sup>12)</sup>에서는 동 조사 업무를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의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협회를 통해 슈링크플레이션<sup>13)</sup> 취약 품목

11) 「계량에 관한 법률」

**제50조(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비법정단위의 단속, 교정대상 측정기기의 교정이력 확인, 정량표시상품의 정량관리 및 불법계량기의 유통방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업자등,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정량표시상품사업자, 계량을 수행하는 자 및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2. 사업장, 점포, 영업소, 사무소, 공장, 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계량기의 훼손·조작 여부 확인 등 위반사항에 대한 검사 및 질문
3. 유통 중인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 등에 대한 시판품의 조사

12) 「계량에 관한 법률」

**제65조(한국계량측정협회)** ①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6. (생략)
7.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8. 그 밖에 계량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사업

13)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은 기업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물의 양, 크기, 수량 등을 몰래 줄여 실질적인 가격을 올리는 현상을 말함.

등 소비자 피해 우려 상품<sup>14)</sup>을 매년 약 500~1,000개 내외로 소매로 구매하고, 표시사항 준수 여부 및 표시량과 실제 내용량 간의 허용오차 검사 등 시판품 조사와 관련된 실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sup>15)</sup>.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규모가 상품별 시료 수를 기준으로 연간 1천여 개에 불과<sup>16)</sup>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등 관련 업무를 산업통상부 및 시·도 소속 공무원과 협회 등 복수의 주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무적으로는 산업통상부가 협회에 위탁하여 사실상 일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식과는 달리, 법 체계상으로는 업무 수행의 주체와 전문성, 책임 구조 등이 일원화되지 않은 구조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14) 우유, 라면, 커피, 밀가루, 설탕, 식용유, 화장지, 세척용품 및 위생용품 등 집중관리 7대 품목 및 슈링크플레이션 취약 상품

15)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절차  
: 시료 구매(협회) → 검사(KTC) → 검사결과 취합(국가기술표준원)

16)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규모 관련 해외 사례(2024년 기준)  
: (호주) 약 23만여 개, (일본) 약 16만여 개, (독일) 약 6만여 개, (중국) 약 2만여 개

이와 같은 법·제도상 구조는 조사 대상 품목의 확대, 조사 주기의 체계화, 전문 인력의 지속적 확보 등 증가하는 정량표시상품 관리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사후관리 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임.

이에 개정안은 일정한 조직·인력·시설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정책 연구 등 관련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특히,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을 통해 시판품 조사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한 상시적 관리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전담기관의 임직원을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및 청문에 관한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위탁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분산된 정량표시상품 관리 역량을 전담기관으로 집중시킴으로써, 시판품 조사의 시료 선정부터 결과 분석, 홍보·교육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임.

다만, 현행법상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업무는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조사 권한(제50조)을 전제로 하여, 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바(제65조제2항제7호),

개정안과 같이 전담기관 지정 근거 조항만을 신설할 경우, 현행법상 이미 복수로 규정된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주체에 또 하나의 주체를 추가하는 결과가 되어, 전담기관 도입을 통해 조사 기능의 전문화·집중화를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조사 주체의 병렬적 확대에 그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향후 하위법령 또는 운영과정에서 업무 중복이나 권한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전담기관의 지위와 기능을 중심으로 기존 조사 주체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는 등 역할 분담 또는 기능 통합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차원의 체계 정비도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3. 정량표시 위반사실의 공표 근거 마련

개정안은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품에 표시된 양을 실제 내용량보다 크게 표시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제3호 신설).

[ 개정안 조문대비표 ]

| 현행                                                                                                                                        | 개정안                                                                                                                                         |
|-------------------------------------------------------------------------------------------------------------------------------------------|---------------------------------------------------------------------------------------------------------------------------------------------|
| 제51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br>1. 2. (생략)<br><u>&lt;신설&gt;</u><br><br>② (생략) | 제51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br>-----<br>-----<br>-----.<br>1. 2. (현행과 같음)<br>3. <u>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품에 표시된 양을 실제 내용량보다 크게 표시한 경우</u><br>②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51조제1항<sup>17)</sup>은 위반사실 공표 대상 행위를 계량기와 관련된 중대한 위반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17)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제51조제1항의 각 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호는 계량기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공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2호는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 자체를 공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 중 제2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품에 표시된 양을 실제 내용량보다 크게 표시한 경우 그 위반행위 자체를 위반사실 공표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정량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42조<sup>18)</sup>에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량의 표시 또는 표시의 정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명령을 받은 자에게 개선 결과의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우선하는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정량표시 위반에 대한 규율 방식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우선

---

18) 「계량에 관한 법률」

**제42조(정량표시 위반의 시정)**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정량의 표시를 명하거나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을 요구받은 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개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 및 개선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시정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후속 조치를 판단하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는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는 등 제37조제3항19)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의성과 위법성이 뚜렷한 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 자체를 공표 요건으로 삼은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율 방식과는 구별되며,

오히려 계량기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곧바로 공표로 나아가기보다는 일정한 시정조치 절차를 거친 이후 그 이행 여부에 따라 공표를 가능하게 한 제22조<sup>20)</sup> 및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율 방식에 더 부합하는 구조로 보임.

---

19) 「계량에 관한 법률」

제37조(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등) ③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 「계량에 관한 법률」

제22조(제품결함의 시정) ①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계량기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수거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등을 명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계량기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해당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상황 또는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위반사실의 공표는 사업자의 영업활동 및 사회적 평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재적 성격의 조치라는 점에서, 그 적용요건과 범위가 법률 차원에서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정량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공표요건으로 하는 단계적 구조를 설정하는 것이 법체계의 정합성과 제재적 조치로서의 비례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산업통상부도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참고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위반사실 공표로 인하여 대상 기업이 입게 되는 명예훼손 및 유·무형의 손실 규모가 상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공표 대상 및 절차는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
|--------------|
| 문 의 처        |
| 02)6788-5457 |